

# 西洋服飾史에 나타난 禁制考察

## A Review on the Sumptuary Laws of Western Costume

慶熙大學校 衣裳科

助 教 授 金 仁 淑

*Dept. of Clothing,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 In Sook Kim

### <目 次>

I. 緒 論

II. 服飾禁制의 目的

III. 資料 및 整理

IV.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lies in reviewing of the western costume history in the light of the negative regulations concerning costumes and adornments.

Readings related with the subject lead to the following findings:

1.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sumptuary laws has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feudalism and the frequency of their occurrence is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feudal system, its decline, the appearance of imperial regimes and the start of civil revolutions.
2. Sumptuary regulations spread westward with the flow of civilization, eg., in the sequence of Italy, Swiss, France, Britain and New World.
3. Sumptuary laws are also found in abundance in the English colonies of America, and their object seems to be rather of the moral concern than class distinction of economical restriction.
4. The reviewed sumptuary regulations are concerned with:
  - A. Material gold or silver clothes, silks, ermine, marten or miniver furs, velvets, laces and embroies.
  - B. Colors-Purple, scarlet and red. Other colors do not show consistent pattern of color-status symbol.
  - C. Form-Length and width of headdresses, shoes, collars, trains or hoops.
  - E. Numbers of dresses allowed to be worn.

### I. 緒 論

奢侈規制法을 사전에서는 「원래는 음식, 음료, 의복, 장신구 기타 사치품목의 개인의 지나친 소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었다고 풀이하고 「최근에 와서는 특정물품의 생산 및 소비를 금하

거나 혹은 국내 소비성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어떤 사회가 사치규제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회내에 숨에 명기된 바의 특정한 내용의 사치가 범람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식이 食·와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양식, 나아

가서는 문화의 패턴을 비추는 거울의 하나라면, 그러한 복식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규제를 통해 복식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복식사의 이해에 있어 역설적 혹은 反語的 視角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Ⅱ. 服飾禁制의 目的

복식금제의 가장 우선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은 물론 계급적 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복식으로 계급을 상징하며 복식은 곧 儀章이나 位階秩序를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상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즉 신분을 벗어나는 衣裳행위는 곧 질서의 파괴, 사회혼란을 조장시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봉건주의 계급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로서 안정되어 있을 때보다 상업과 교역의 발달로 富를 획득한 상인들이 봉건적인 속박을 화폐로 相殺시키고 지배계급이 지녔던 기존의 질서와 우선권을 넘보기 시작할 때부터 가중되었다. 따라서 복식금령은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13세기경에 그 출현빈도를 늘려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가, 衣裳으로 인한 계급표식이 不法化된 18세기末 불란서 혁명기에 이르러 그 존재의의를 잃거나 혹은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즉,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복식은 종적인 位階의 상징대신, Cockades 나 pantaloons 등에서 보는 정치意識의 상징, 혹은 incroyable 및 ridicules 群에서 보는 의복에 대한 思想표현으로 橫의 구분의 매체가 되었던 것이다. 복식을 계급표식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는 우리나라 신라 흥덕왕때에 내려진 복식금령의 서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사람에게 있어 上下가 있고 지위에는 尊卑가 있으며, 이름도 같지 않은데 의복 또한 다르다」<sup>2)</sup>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복식금령의 목적은 윤리적인 것일수도 있다. 국가가 家父長적 역할을 하던 사회에서는 최고 통치자는 그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면은 물론 윤리적·도덕적 측면에까지 보호자적인 관여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권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교회가 복

식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과도 관계가 있으며, 또한 윤리적 가치가 종교적 가치와 동일시되던 사회에서는 가치의 기준이 黑白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어 규제령의 명분이나 시행에 용이성을 가져다준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윤리적 목적은 前述한 흥덕王 때의 序言中 「분수를 지나쳐 예의에 거슬리고 풍속이 쇠락하여 가고 있다.」는 대목이나 신대륙의 청교도들의 「복장의 過飾은 우리들의 황망한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sup>3)</sup>는 복식금제의 辯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상에 든 관념적 목적 외에 경제적 목적도 중요하다. 自國산업의 보호를 위해 17세기 초반부에 Richelou 나 Mazarin 이 행한 金·銀絲織物이나 레이스 종류에 대한 금령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自國生業의 보호외에도 정부의 稅收증가라든지, 전체 국민의 소비지출의 절감을 통해 국가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자는 목적도 있었고, 또한 戰時에는 군수물자조달을 위해 비실용적 범위에서의 물자의 낭비를 규제할 수도 있다. Phillips 와 Staley 는<sup>4)</sup> 이들 목적외에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국민 건강의 보호 또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 중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목적은 1. 계급差 유지, 2. 윤리적 목적, 3. 稅收증가라고 하였다.

## Ⅲ. 資料 및 整理

복식에 대한 최초의 규제는 기원 1200여년전의 아시리아인의 율법에 「自由民 기혼녀는 公共의 자리에서는 베일을 써야한다」<sup>5)</sup>는 항목에 나타난다. 또한 기원 7세기전경의 그리스 솔론의 율법에는 여자들은 한번에 세벌 이상의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액수는 그녀가 속한 家長의 富力에 依한다는 조항이 나타나고, 기원 2세기 전의 로마에서는 잔치에 청할수 있는 손님數나 잔치에 드는 비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서구에서 사치의 규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富를 획득한 중산층이

<표 1> 25년 간격으로 나타난 복식금령의 빈도수

년	도	이태리	독 일	스위스	프랑스	영 국	식민지 (미국)	합 계
1675~1700		—	—	—	—	2	2	4
1650~1674		—	—	—	—	3	19	22
1625~1649		—	—	37	10	4	23	74
1600~1624		—	—	4	—	7	6	17
1575~1599		—	—	—	—	38	—	38
1550~1574		4	—	4	19	10	—	37
1525~1549		3	—	3	20	34	—	60
1500~1524		4	—	—	—	37	—	41
1475~1499		—	13	5	—	16	—	34
1450~1474		3	—	7	—	28	—	38
1425~1449		—	—	—	—	1	—	1
1400~1424		1	—	—	—	23	—	24
1375~1399		3	—	14	—	1	—	18
1350~1374		1	21	—	—	27	—	49
1325~1349		7	—	—	—	2	—	9
1300~1324		6	—	—	—	—	—	6
합 계		32	34	74	49	233	50	472

출처 : Phillips, Joana W.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Legislation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ed. Gurel, Louis M. and Marianne S. Beeson(Iowa: Kendall/Hunt), p.69.

봉건사회의 영주와 권력을 견주는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중세이후 사치규제가 활발하게 시작된 곳은 이태리, 스페인 등지의 르네상스의 기운을 가장 일찌기 해동시킨 곳이며, 이 금제령의 시행은 르네상스文化의 西·北進을 따라 南歐에서 中歐로 中歐에서 대륙을 건너 영국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1 참조>

이러한 사치규제령은 이 습의 목적이 「계급차의 표시」이라는 사회적 욕구에서 稅收의 증가라든지,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의 방편으로 변해감에 따라 그 출현 빈도가 줄어들며, 18세기말의 불란서 혁명기에 이르면 복식에 의한 계급의 표지가 불법화된다. 이후로 어떤 사회내에서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규제령은 그 존재가 불가능해지고 단지 汎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이익이나 국민전체를 그 수혜대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복식규제령을 살필에 있어 규제대상의 품목이나 특징을 한 눈에 보는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규제령 (1) 자료 (2) 색 (3) 형태 (4) 매수로 구분하여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형편상 복식규제령에 직접 접할 수 없어 二次的이고 간접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이 고찰이 이루어졌으므로, 규제령의 법령으로서의 구속력, 세부조항 및 年代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런 경우라도 참고사항으로 표기하여 누락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 IV. 結 論

앞에서 살펴본 자료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복식금령은 봉건제도의 계급分化和 긴밀







얼굴의 좌우양측 4" 이상 벗어나는 ruff	수염의 길이	수염의 형태 路上에서 cloak 착용	우스포드대학의 교수 및 학생	可	不	可	不	15세기	16세기	1634	1651
손가락 한마리 를 넘는 幅의 부이나 손부의 ruff	구두의 길이 24" 이상 12" 이상 6" 이상	뒷등과 소매에 각한개 이상의 가윗발 (slashing) 을 낸의상	gentlemen 王子 종교인 하급민	可	不	可	不	프랑 스	프랑 스	Massachusetts	New Jersey
지름이 1.5마 이상 되는 후프 (farthingale)		무릎의 단추 및 points 장식 거대한 Boots	모든 男女 모든 男女	可	不	可	不	프랑 스	프랑 스	Massachusetts	New Jersey
지나치게 큰 ruff와 소매		항수·화장품·연지·義齒·가발·높은 구두	낮은신분의 男子 모든 女子	可	不	可	不	프랑 스	프랑 스	Massachusetts	New Jersey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枚數에 관한 雜令

해 당 계 급	枚 數	착용可 不	기	타	년	도
부녀자	한번에 3벌 이상	不可			BC 638~559	그리스
부녀자		不可		지출은 그녀가 속한 家長의 財力에 따라 제한됨. 우단 및 綉縵 의상의 허용枚數는 신분에 따라 정해짐.	"	"
공작·자작·백작·기사		可		허용된 의상은 각각 印箋을 적어 표시해야 함. 每年, 정해진 매수의 가운데 着用可.	14~16C	이베리
신분에 따라		可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의 가격을 정함. 의복에 달린 장식구의 매수와 質을 제한함.	"	"
王	원하는 매수대로	可			1294	프랑 스
王 제의	年 4벌 이상의 suits	不可			"	"
누구든지	年 2枚 이상의 외부	不可			1560~1574	스페인
"	2년에 한벌 이상의 雨衣	不可			"	"
"		不可		한벌의 양복을 완전히 가리도록 또 한벌의 양복을 겨임음이 不可.	"	"

<표 5>

한 관계가 있으며 복식의 근본적 기능이 신분의 상징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징질서의 위반은 곧 犯法이 되고, 이러한 犯法은 「규제의 습」이라는 법률적 구속행위를 요구했다. 따라서 복식금령의 출현회수는 제급分화가 그 필수조건이었던 봉건사회가 완성된 13세기에서부터 그 체제가 위협을 받고 붕괴되어 왕정을 거쳐 시민혁명에 이르는 역사의 과정과 관계가 있다.

둘째, 복식금령은 文化的 西進에 따라 대륙의 동부 및 남부, 즉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가장 일찌기 나타나며 그 후 출현빈도의 中心이 독일, 스위스 등의 중부 및 북부로, 다시 대륙을 건너 영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기존의 사회체제에서 벗어나 제급제도의 속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다고 볼 수 있는 신대륙에서도 빈번한 복식규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의 복식금령은 제급규제의 목적보다는 윤리적·종교적 목적이 勝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禁奢의 내용에 의해, 제급의 표시, 윤리적 목적, 종교적 목적을 위한 복식규제의 대상이

1. 재료로는 金, 銀絲織, 絹, 毛皮, 우단, 레이스 종류가 主가 되었고,
2. 색은 紫朱 혹은 朱紅色이 王의 색으로서 규제됨을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색은 시대를 통해 신분과 색과의 직접적 상징성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3. 형태는 주로 모자·신발·칼라·의상의 높이, 길이, 폭의 크기로 규제를 했다.
4. 또한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의 枚數, 衣裝에 투여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이란 方法도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 註

1.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21.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1). p.413
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974). p.559.
3. E.B. Hurlock, "Sumptuary Law",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ed.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uboltz Eich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5). p.299.

4. Joana W. Phillips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Vegislations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Vois M. Gurel and Marianne S. Besson. 3rd ed. (Iowa: Kendall/Hunt). pp.68-69
5.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p.46
6. 중세에 많이 사용하였던 얇은 絹종류(ERNEST. p.1417)
7. 신상옥. 서양복식사(서울:수학사, 1981). p. 48.
8. 이 "슬픈 색"은 黑色·灰色·짙은褐色을 뜻함이 아니라, 엷은 색, 絨도가 떨어지는 낡은 기분나는 색을 의미한다. (Warwick, Pitz and Wyc-koff, p.116).
- 9,10. 이 두 항목의 년도는 명확치 않으나 9는 Henry 8세, 10은 Elizabeth 여왕 제위시에 취해진 금령이므로 그 제위기를 대략의 년도로 표기해 보았다.
11. 이 금령의 완전한 文面은 "연령과 지위, 직업, 미·기혼·과부를 불문하고 이 금령 이후 향수 화장품·연지·의치·가발·높은 구두를 신으므로써 臣民을 유혹하거나 속임수로 결혼에 이르도록 하는 자는 마술이나 혹은 그에 유사한 罪법행위에 관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흥미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Marg and Joanne, p.299).

#### BIBLIOGRAPHY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81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974
- 이병주, 이재, 조원홍, 김병관, 김민제 共著. 「세계문화사」, 서울:일조각, 1979
- Boucher, François.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Vol.1. New York: Crown.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Vol. II. Amsterdam: Elsevier, 1967.
-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75.
- Hurlock, E.B. "Sumptuary Law"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ed.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uboltz Eich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5.
- Phillips, Joana W.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Legislations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ed. Lois M. Gurel and Marianne S. Besson. 3rd ed. Iowa: Kendall/Hunt.
- Rosencranz, Mary Lou. *Clothing Concepts*. New York. Macmillan, 1972.
- Warwick, Edward, Henry C. Pitz and Alexander Wyckoff. *Early American Dress*. New York: Amaryllis, 1965.